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5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김남희 · 박용갑
김정호 · 임미애 · 송재봉
안태준 · 염태영 · 문진석
이정문 · 손명수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청소년의 스트레스 · 우울 및 정서적 문제와 신체활동 부족 등의 건강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 대응하고,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기술,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도록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

이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 · 시행하도록 하고, 청소년의 체력 향상, 정서 회복을 위한 건강 체험 및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, 청소년 건강을 회복 · 증진하고 주도적 성장과 디지털역량을 함양하여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

주요내용

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(법률 제17285호, 2020.5.19. 일부개정)에 따른

인용 조문 번호의 변경(제9조의2)

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 개발·시행, 건강체험
활동,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발굴·운
영 및 지원(제34조의2 신설)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5항제2호 중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제3항”을 “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,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(청소년수련활동의 진흥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 활동 진흥시책을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) ① ~ ④ (생략)	제9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	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1조제4항----- -----
⑥ ~ ⑨ (생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34조(청소년수련활동의 진흥)</u>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 진흥시책을 개발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발

<u>제34조</u> (생략)	<u>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u> 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제34조의2</u> (현행 제34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